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

나. 연금지급형태에 관한 사항

연금지급형태		
적립형, 거치형	종신연금형	10년, 20년보증지급(정액형)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즉시형	종신연금형	10년, 20년보증지급(정액형)
	확정연금형	1년 ~ 20년

다. 가입 요건

이 보험으로의 가입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을 이체받는 경우에 한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구분		적립형, 거치형	즉시형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Y)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까지	만Y세 계약해당일부터 1년 ~ 20년(연단위)까지

※ 확정연금형의 경우 계약이전 받기 전 계약과 계약이전 받은 후 계약의 총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나.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 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Y)	보험료 납입주기
적립형	1년 ~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0세~ (Y-납입기간)세	만55세 ~ 80세	월납
	전기납	0세~ (Y-1)세		
거치형	일시납	0세~ (Y-1)세	만55세 ~ 80세	일시납
즉시형		만55세 ~ 80세		

※ 이 보험은 거치형 보험과 적립형 보험의 납입금액,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한 저축성보험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함.

※ 적립형의 경우, 이체 받은 후 이 보험계약의 납입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보험회사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자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이체 받기전 계약과 계약이체 받은 후 계약의 총 납입기간은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거치형의 경우, 이체 받은후 이 보험계약의 거치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5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보험회사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자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이체 받기전 계약과 계약이체 받은후 계약의 총 거치기간은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즉시형의 경우,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보험회사로 이체되고 이체전 계약의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

보험연도말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배당금의 지급방법

‘가’ 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소멸시에 보험금 등에 더하여 지급한다.

(2) 연금개시일 1년전 계약해당일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시 증액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개시일 이후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매년 연금지급시 가산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금개시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1)’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적립형

: 월 12만원이상 ~ 150만원이하

다만, 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연금지축추가 납입특약 이외의 특약의 보험료는 연간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나. 거치형, 즉시형

‘14.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중 ‘나’에 의한 이전금액을 한도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가. 선납보험료는 매년 당월분을 포함하여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적립형의 경우,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적립형에 한함)

적립형의 경우,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 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적립계약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

준이율의 90% ~ 11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end{aligne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 f2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다. ‘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 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적립형의 경우, 회사는 약관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14.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가’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4)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마. 이 보험계약으로 이전받은 계약의 처리

(1) 보험료가 납입 중인 계약

이전받은 금액으로 이 보험의 거치형에 가입하고, 잔여납입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로 절상하여 이 보험의 적립형에 가입하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개시일 및 연금지급기간은 동일하게 하여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이 보험의 적립형과 거치형은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한다.

(2) 보험료의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

이 보험의 거치형에 가입한다

(3) 연금지급중인 계약 또는 연금지급조건(보험료 납입기간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등)을 충족한 계약

이 보험의 즉시형에 가입한다

다만, 이전 되기 전 계약에서의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하여 총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한다.

(4) 회사가 이전받은 계약이전 금액은 부가하는 특약의 보험료로 대체할 수 없다.

바.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다.

15.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1)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운용한다.

(2)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대상 적립보험료는 영업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다.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납입일이 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보험금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해지환급금 또는 책임준비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1)’ 및 ‘(2)’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 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6.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

(1) 적립형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월납보험료 × 12 × Min{납입기간, 10}』으로 한다.

(2) 거치형, 즉시형

이 보험의 계약보험가입금액은 일시납보험료로 한다.

- 나. 적립형 및 거치형에 한하여,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 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 라.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